

정보공개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준용)

제정 2011. 11. 17

제1조(목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 이라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보라 함은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한일 외교관계 등에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재단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6조(정보공개결정) ①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③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①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각부서장을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경영지원실장이 담당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①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보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년 월 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p>	

[별지 제4호서식]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년 월 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내용	
------------	--

결정 내용	
-------	--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	-------	--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	-----------	-------

교부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	-------	---------	----------	-------

납부 금액	①수수료 <small>원</small>	②우송료 <small>원</small>	③수수료 감면액 <small>원</small>	계(①+②-③) <small>원</small>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년 월 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년 월 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